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2
----------	-----

제출년월일 : 2000. 12.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로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미만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투의 재질을 보완하며,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5톤미만을 대상으로 함.

나. 5톤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 (안 제4조)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0.5톤 미만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
- 0.5톤 이상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찢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안 제6조)

-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함으로써 재질이 약하여 찢어짐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등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찢어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봉투의 재질을 보완하려는 것임.

라.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의 변경 (안 제9조,제14조)

-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0.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⑥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시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중 “공공용봉투는” 다음에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합유봉투, 생분

괴성봉투, 합성수지봉투 중에서 제작하되, 생봉괴성 봉투는"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는 "수급권자"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규칙개정)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
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권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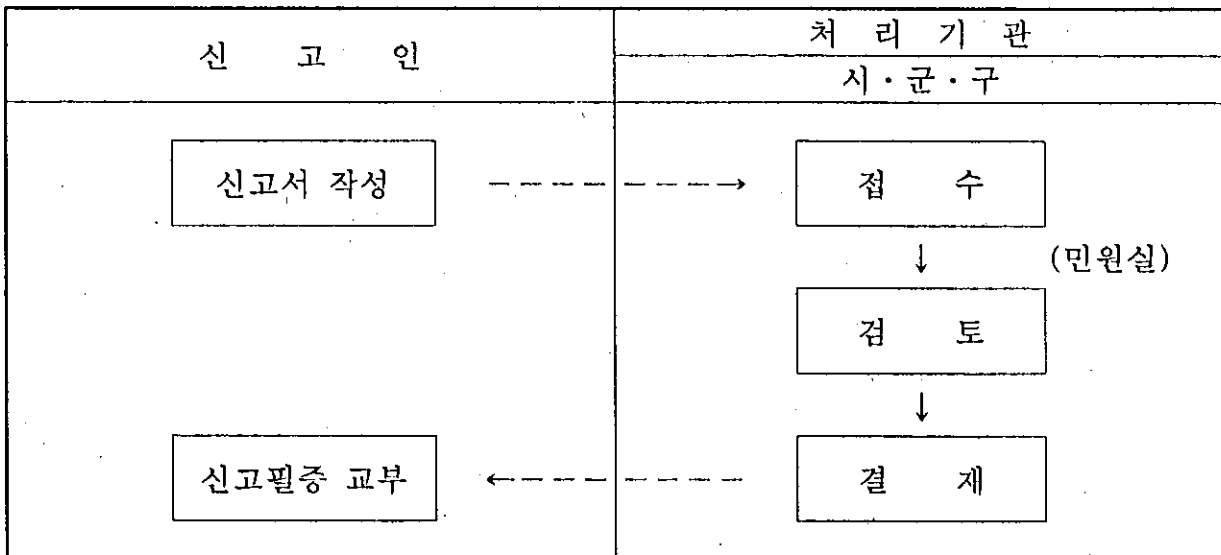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940-4478
입 안 자	환경보호과장	박 칠 순
	청 소 담 당	조 양 휘
	담 당 자	윤 희 기

☐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 상 호(명 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지등록번호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 주 자	상 호(명 칭)			대 표 자					
	주 소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 폐기물의 종류		⑫ 배출량	⑬ 운 반		⑭ 처 리				
			운 반 자	운 반 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 리 량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⑱ 변 경 사 유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신 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없 음	

〈작성요령〉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⑪란은 건설폐재류·폐목재류·폐금속류·폐종이류·오니류·폐섬유류 및 소각잔재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⑭은 「처리구분」, 「처리방법」란은 위탁으로 기재 바랍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⑦, ⑪ 및 ⑬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류	⑪ 배출량		⑫ 운 반		⑬ 위탁처리			
	톤/월	톤/연	운 반 자	운반량 (톤/연)	처 리 구 분	업 소 명	처 리 방 법	처리량 (톤/연)

< 변경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처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이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1), (2)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한다)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 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 · 구문대조표

(과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목적) 1~4 (생략) (신 설)			제2조(목적) 1~4 (현행과 같음)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0.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 구문대조표

(과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6)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시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 재질등) (1)~(2) (현행과 같음)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 재질등) (1)~(2) (현행과 같음)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 재질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3)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신설)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진분)를 30%이상 섞는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고 사업장용봉투중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 명하게 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000. 1. 22)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합유봉투, 생분괴성봉투, 합성수지 봉투중에서 제작하되, 생분성봉투에는		
(4)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①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한다)의 부과 ·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까지 운반 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98. 11. 5. 개정 2000. 1. 22)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 ①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한다)의 부과 ·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동까지 운반 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98. 11. 5. 개정 2000. 1. 22)	④(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	
1. ~ 3. (생 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는
				1. ~ 3. (현행과 같음)

신 · 구문대조표

(과주시 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96. 11. 19)(개정 2000. 1. 22)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96. 11. 19)(개정 2000. 1. 22)	제14조(수수료의 감면)①	제14조(수수료의 감면)①	제14조(수수료의 감면)①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 3. (생 략)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신 · 구문대조표

(퍼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기준)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읍 · 면 · 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기준)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읍 · 면 · 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기준)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1인당 월30ℓ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1인당 월30ℓ			
2. (생 략)	2. (생 략)			